

NICE신용평가 Code of Conduct 이행실태 보고서

(점검대상기간 : 2018.1.1~2018.12.31)

2019.01.31

NICE신용평가(주)(이하 “NICE신용평가”)는 국내 신용평가시장을 개척해 온 선도적 신용평가회사로서, 자본시장의 발전을 위해 투자자로부터 신뢰받는 신용평가정보를 적시에 제공하여 왔으며, 활발한 연구활동 및 신상품 개발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NICE신용평가는 객관성, 독립성, 일관성, 투명성, 신뢰성 등 신용평가업 영위를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기본 원칙의 준수를 위해 기본적인 덕목과 행동양식을 명문화한 최상위 규정인 NICE신용평가 Code of Conduct를 2006년 5월 제정한 바 있으며, 2008년 5월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가 개정하여 전세계 신용평가기관에게 적용을 권고한 신용평가사에 대한 행동규범(Code of Conduct Fundamentals for Credit Rating Agencies)을 반영하여 NICE신용평가 Code of Conduct를 2010년 1월에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2013년 11월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규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NICE신용평가 Code of Conduct를 개정하여 홈페이지(<http://www.nicerating.com>)에 공시하였으며, 이를 구체화한 각종 규정을 마련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NICE신용평가 Code of Conduct는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가 2004년 12월 제정하고 2008년 5월 개정한 신용평가사에 대한 행동규범(Code of Conduct Fundamentals for Credit Rating Agencies)에 담긴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였으며, 신용평가회사로서 NICE신용평가가 확보하고자 하는 신용평가과정의 질과 성실성, 독립성과 이해상충 방지, 투자자, 피평가자 및 시장에 대한 의무, 그리고, Code of Conduct 공시 및 적용에 대해서 규율하고 있습니다. NICE신용평가는 동 Code of Conduct의 준수를 위해 매년 정기적인 내부교육과 이행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2018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의 1년 간 NICE신용평가 Code of Conduct 의 항목별 준수여부에 대한 자체 점검 결과를 밝히고자 합니다.

1. 신용평가과정의 질과 성실성

A. 신용평가 과정의 질

■ 체계적인 평가방법론의 수립과 적용

- NICE신용평가는 책자 발간 및 홈페이지를 통해 신용평가 방법론을 공시하고 있으며, 이를 매년 수정, 보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외 경제환경 및 시장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신규 금융상품 및 업종에 대한 평가방법론을 지속적으로 연구, 개발하고 있습니다.
- 보고서 작성 대상기간 중 신용평가일반론을 조정하면서 8개 부문(신용평가 개요, 신용평가 체계, 신용평가 절차, 재무위험 평가, 채무특성 반영, 단기등급 평가, 신종자본증권 신용평가, Bank Loan 신용평가)을 개정하였으며, 1개 부문(제3자 요청 평가)을 제정하였습니다. 산업별 평가방법론은 12개 업종(자동차, 철강, 제약, 디스플레이패널, SI, 건설, 항공운송, 발전, 호텔, 생명보험, 손해보험, 할부리스업)을 개정하였습니다. SF평가방법론은 기존 방법론 중 2개 부문[소비자금융채권, 기업매출채권]을 개정하였으며, 1개 부문(항공기금융채권)을 신규로 제정하였습니다.
- 평가방법론 제정 또는 개정 시 사전Draft를 1개월 이전에 당사 홈페이지에 공시하여 의견수렴절차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으며, 최종본은 대외기관(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과 당사 홈페이지 등에 기한 내 공시하고 있음.

[신용평가방법론 공시 현황(2018.1.1~12.31)]

| 번호 | 구분 | 신용평가방법론 | 공시일 | 비고 |
|----|-----------|--------------|------------|----|
| 1 | 산업별 평가방법론 | 생명보험 | 2018.01.04 | 개정 |
| 2 | 산업별 평가방법론 | 손해보험 | 2018.01.04 | 개정 |
| 3 | 신용평가일반론 | 제3자 요청 평가 | 2018.02.28 | 제정 |
| 4 | 신용평가일반론 | 기초6. 채무특성 반영 | 2018.03.15 | 개정 |
| 5 | 신용평가일반론 | 기초7. 단기등급 평가 | 2018.03.15 | 개정 |
| 6 | SF평가방법론 | 소비자금융채권 | 2018.03.15 | 개정 |
| 7 | 산업별 평가방법론 | 건설 | 2018.03.15 | 개정 |
| 8 | 산업별 평가방법론 | 디스플레이패널 | 2018.03.15 | 개정 |

| | | | | |
|----|-----------|----------------|------------|----|
| 9 | 산업별 평가방법론 | SI | 2018.03.15 | 개정 |
| 10 | 산업별 평가방법론 | 발전 | 2018.03.15 | 개정 |
| 11 | 산업별 평가방법론 | 제약 | 2018.03.15 | 개정 |
| 12 | 신용평가일반론 | 기초4. 채무위험 평가 | 2018.03.15 | 개정 |
| 13 | SF평가방법론 | 기업 매출채권 | 2018.03.15 | 개정 |
| 14 | 신용평가일반론 | 개관1. 신용평가 개요 | 2018.03.15 | 개정 |
| 15 | 산업별 평가방법론 | 항공운송 | 2018.03.15 | 개정 |
| 16 | 산업별 평가방법론 | 호텔 | 2018.03.15 | 개정 |
| 17 | 산업별 평가방법론 | 자동차 | 2018.03.15 | 개정 |
| 18 | 산업별 평가방법론 | 철강 | 2018.03.15 | 개정 |
| 19 | 신용평가일반론 | 개관3. 신용평가 절차 | 2018.03.15 | 개정 |
| 20 | 신용평가일반론 | 개관2. 신용평가 체계 | 2018.03.29 | 개정 |
| 21 | 신용평가일반론 | 신종자본증권 신용평가 | 2018.06.01 | 개정 |
| 22 | 신용평가일반론 | 개관2. 신용평가 체계 | 2018.06.01 | 개정 |
| 23 | 신용평가일반론 | 기초6. 채무특성 반영 | 2018.06.01 | 개정 |
| 24 | 신용평가일반론 | 기초7. 단기등급 평가 | 2018.07.17 | 개정 |
| 25 | SF평가방법론 | 항공기금융채권 | 2018.08.07 | 제정 |
| 26 | 신용평가일반론 | Bank Loan 신용평가 | 2018.09.03 | 개정 |
| 27 | 산업별 평가방법론 | 할부리스업 | 2018.11.06 | 개정 |

■ 신용평가 과정의 신뢰성 및 적시성 확보

- 신용평가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NICE신용평가의 모든 신용등급 결정 권한은 내규에서 정한 신용등급평정위원회에서 보유하며, 신용등급평정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신용평가업무규정 및 신용평가업무세칙, 신용등급평정위원회운영지침 등의 성문화된 내규로 정하고 있습니다.
- NICE신용평가는 신뢰성 및 적시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는 정보를 바탕으로 신용평가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평가의 적정성 및 신용등급평정위원회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적절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직원을 애널리스트 및 평정위원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 NICE신용평가는 관계 법규와 내규에 따라 신용등급 결정의 근거가 되는 자료와 평정기록 관리를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제반 설비

및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된 시스템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시스템 개선 노력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 NICE신용평가는 신용평가의 연속성을 제고하고 신용평가 과정에 편견이 개입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평가조직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해당 평가조직은 개별 신용평가를 수행함에 있어 평가 실무팀과 평가 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B. 공시 이후 신용등급의 사후관리

- NICE신용평가는 신용평가업무규정 및 신용평가업무세칙, 정기평정실시지침, 내부심사운영지침 등 신용등급의 사후관리에 대한 내규에 따라 신용등급의 공시 이후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필요 시에는 적시에 신용등급을 조정하여 공시하고 있습니다.
- NICE신용평가는 환경변화가 기업의 신용위험과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이에 대한 보도자료, 스페셜리포트, 마켓코멘트, 그룹분석보고서 등의 공시를 통해 의견을 개진하는 등 등급 사후관리 활동을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C. 신용평가 과정의 성실성

- NICE신용평가와 NICE신용평가 임직원은 신용평가 과정에서 NICE신용평가 Code of Conduct 및 관련 내규에 규정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 NICE신용평가와 NICE신용평가 임직원은 평정위원회를 통해 신용등급이 결정되기 이전에 특정 등급을 부여하겠다는 직·간접적인 언급 및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 NICE신용평가는 신용평가부문과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준법감시부서를 두어 Code of Conduct, 관련 내규 및 법규 등의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동 준법감시부서는 관련 준법감시규정 및 세부지침에 근거하여 준법감시활동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 독립성과 이해상충 방지

A. 총칙

NICE신용평가는 NICE신용평가, 피평가자, 투자자 및 기타 시장참여자에게 미칠 경제적, 정치적, 기타 영향을 고려하여 등급행위를 하거나 자제하지 않고 있으며, 이를 준수하기 위해서 평가방법론, 평가기준, 신용등급평정위원회의 독립성 확보를 주기적으로 점검 및 보완하고 있습니다.

■ 신용평가 과정의 독립성 확보

- NICE신용평가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신용평가 과정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제335조11(신용평가회사의 행위규칙) 제7항 및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24조의8(신용평가회사의 행위규칙 등)제3항”에 따라 NICE신용평가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신용평가를 수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NICE신용평가 Code Of Conduct 3.4.1항에 의거하여, NICE신용평가는 신용평가서 교부시 신용등급을 공시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NICE신용평가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거나 반대로 피평가자가 NICE신용평가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등 특수관계에 있는지 여부가 기재된 “NICE신용평가(주)의 발행사에 대한 신용평가 적정 여부”를 함께 발부하고 있습니다.
- NICE신용평가는 신용평가 과정의 독립성을 위해 영업조직과 신용평가조직을 완전히 분리하여 운영하고, 조직 간 정보 및 인사의 교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영업조직은 신용평가 계약의 체결 및 평가 의뢰·권유 등 평가대상기업에 대한 영업관리를 담당하며, 기업RM본부, 금융RM본부, SF RM본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신용평가조직은 평가정책본부, 기업평가본부, 금융평가본부, SF평가본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용등급평정위원회 위원장은 평가QC실 전문평정위원이 담당하고 있으며, 신용등급평정위원회 위원은 평가조직의 부서장과 애널리스트로서 평가업무경력 5년 이상인 자(등급제시부서 소속인원 제외)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영업조직이 신용등급평정위원회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여 이해상충 가능성을 철저히 방지하고 있습니다.
- NICE신용평가는 신용평가 담당직원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신용평가 과정에서 이해상충의 소지가 있는 애널리스트의 참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해관계가 있는 애널리스트는 평가업무를 수행할 수 없으며, 등급결정 의 사결정에 관여할 수 없습니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서 신용등급평정위원회 소집 시 “평정위원회 참석자 확인사항”을 체크하게 하여 피평가기업의 이해 관계 해당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있습니다.

- NICE신용평가는 신용평가 담당직원에 대한 급여정책이 신용평가의 독립성 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기 위해 신용평가 담당직원의 보수가 신용평가등 급의 결정, 평가수수료 등 피평가기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과 직접적으로 연동되지 않도록 하여, 신용평가 담당직원은 개별 직원이 창출한 수익에 근 거하여 평가되거나 보상받지 아니합니다.

■ 이해상충문제관리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

- NICE신용평가는 신용평가 사업부문과 비신용평가 사업부문 간에 존재할 수 있는 이해상충문제의 발생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2007년 11월에 한국 신용정보(주)에서 물적분할하여 설립되었습니다. NICE신용평가는 신용평가 사업과 그 부수업무인 투자평가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예산수립 등에 있어 신용평가사업부문과 투자평가사업부문이 별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NICE신용평가는 신용평가수수료 체계를 공개하고 있으며, 신용평가서비스 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비평가수수료의 피평가자로부터 수취여부를 공개하 고 있습니다. 피평가대상 기업과 관련한 신용평가계약 및 비평가용역계약 실적과 관련한 최근 2년간 내역(신용평가용역과 비평가용역 건수 및 수수 료 총액), 피평가기업이 기업집단일 경우 해당 부문 전체 수수료 중 그 기 업집단의 수수료 비중, 피평가기업의 다른 신용평가 및 비평가용역 수행여 부, 신용평가용역 관련일자(평가개시일, 계약체결일, 평가완료일) 등을 평정 요지에 기재하여 공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공시내용 확대를 통해서 투자자 의 정보 접근성과 신용평가의 독립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 NICE신용평가는 신용평가과정에서 일체의 영업활동이 개입되는 것을 방지 하기 위해 신용평가실무와 수수료관련 업무를 엄격히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애널리스트는 계약체결, 수수료 및 매출채권 관련 업무에 관여 하지 아니하고, 이와 관련된 업무는 영업 관련부서에서 전담하도록 내부규 정에 명시하여 이행하고 있습니다.
- NICE신용평가는 Code of Conduct의 이행여부를 관리하는 별도의 준법감

시조직으로 준법감시인과 준법감시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준법감시부서는 의사결정의 적법성, 타당성 및 효율성을 주로 감시하고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및 이행상황에 대하여 상시적으로 평가, 감독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준법감시인은 임직원의 법규 및 내규준수 실태를 모니터링하여 보고와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NICE신용평가는 신용평가업무의 공정성, 독립성, 신뢰성 및 이해상충관리를 위해서 독립적인 준법감시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용평가를 담당하는 임직원의 판단과 분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현존 또는 잠재적 이해관계의 상충을 인지하고 이를 제거하거나, 관리하기 위해서 준법감시조직과는 별도로 신용평가사업과 타 업무에서 발생하는 이해상충문제를 관리하는 이해상충관리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내부운영규정으로 이해상충관리위원회 세칙 및 이해상충관리위원회 운영지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해상충관리위원회는 부서(본부) 간 이해상충여부의 심의, 임직원의 이해상충문제에 대한 심의, 기타 준법감시부서에서 상정한 의안에 대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 NICE신용평가는 임직원의 이해상충문제 발생 소지가 있는 금융투자상품거래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임직원은 분기별 연 4회에 걸쳐서 증권보유현황 및 거래내역을 준법감시부서에 신고하고 있습니다. 준법감시부서는 신고 시 제출된 자료내용 점검을 통해 해당 증권의 보유적정성 여부 및 행동규범의 준수실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 NICE신용평가는 신용등급평정위원회 참여자가 이해상충 여부를 개별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는 가운데, 이해상충 소지가 있는 애널리스트의 평정회의 참석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여 배제할 수 있도록 통제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상품, 친척[배우자, 부모(배우자 부모 포함), 자녀, 형제자매], 직전 근무기업, 편익수령 등으로 인한 이해상충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없애기 위해 애널리스트가 실시간으로 해당사항 및 변동내역을 등록하고 분기별로 등록내용을 확인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 NICE신용평가는 금전, 물품, 편익 등 재산상의 이익의 수령 및 제공과 관련한 기준, 절차 등에 대한 준수를 위해 관련 법규를 당사의 내규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내규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편익수수 한도나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 이내에서 준수될 수 있도록 관리하기 위해, NICE신용평가는 신용등급평정위원회 참여 인원에 대한 편익수령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시행하는 한편 신용평가업무 관련 편익제공에 대한 적정성을 점검할 수 있

는 전산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NICE신용평가는 신용평가업무에 참여하였던 애널리스트가 발행사 또는 관련 금융기관 등으로 이직하는 경우 해당 애널리스트가 최근 2년간 수행하였던 평정업무에 대한 내용을 점검하여 적절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내부 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3. 투자자, 발행자 및 자본시장에 대한 의무

A. 등급공시의 투명성과 적시성

- NICE신용평가는 신용등급 및 신용평가관련 정보를 적시에 공시하기 위해 다양한 수단을 보유하고 있으며, 홈페이지를 비롯하여 전자우편서비스, 간행물 등을 공시매체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용평가방법론, 장기신용등급평가 결과분석, 산업위험평가, 연간부도율, 신용등급변화표, 평균누적부도율표 등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시장에 공시하고 있습니다. NICE신용평가는 신용평가와 관련된 기본적인 자료인 평가방법론, 등급 및 부도의 정의, 신용평가실적서 등의 자료를 모두 홈페이지 (<http://www.nicerating.com>)에 공시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NICE신용평가는 신용등급을 공시하기 전에 피평가자에게 신용평가 결과를 통보하고 있습니다. 피평가자가 평가결과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추가 소명자료를 수령하여 재심사 절차를 진행합니다. 재심사 수행시에 최대한 신속하게 평가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투자자 보호를 위해 등급감시 대상으로 등재하는 경우는 재심사 절차를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 NICE신용평가는 신용등급관련 정보가 더욱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등 여러 기관에 공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법규에서 정한 신용평가 적정성 등에 관한 서류 공시를 기한 내에 수행하고 있습니다.
- NICE신용평가는 투자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신용평가의 특성 및 한계, 평가대상회사 등이 제공한 정보의 정확성 확인 정도 등에 대한 내용을 신

용평가서에 “유의사항”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B. 비밀정보의 관리

- NICE신용평가는 평가기업 관련 정보에 대한 비밀보호를 위해 신용평가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에 대해서는 기밀유지 계약 또는 제공된 정보에 대한 기밀 유지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부규정에 의거하여 제공된 기밀정보는 별도 관리하고, 피평가자가 제공한 정보는 신용평가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 NICE신용평가는 임직원이 신용평가과정에서 피평가자가 제공한 정보를 개인적 이해관계로 활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해당 정보와 관련된 자의 배우자 등에 대한 증권거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4. 평가사업 Code of Conduct 공시 및 적용

- NICE신용평가는 IOSCO의 신용평가활동원칙(IOSCO Principles Regarding the Activities of Credit Rating Agencies) 및 기본행동강령(IOSCO Code of Conduct Fundamentals for Credit Rating Agencies)의 각 조항을 지지하며 동 조항을 충족한 NICE신용평가 Code of Conduct를 공시하고 있습니다.
- NICE신용평가 및 임직원은 Code of Conduct의 내용을 준수하고 있으며, 준법감시부서는 동 내용에 대한 준수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첨부] 최근 5년간 평가방법론 제정, 개정 현황

| 구분 | 유효 기준 방법론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 | |
|-----------------------|-------------------------------------|------|------|------|------|------|----|----|----|
| 신용평가 일반론 | 개관 1. 신용평가 개요 | 개정 | 개정 | 개정 | | 개정 | | | |
| | 개관 2. 신용평가 체계 | | 제정 | | | 개정 | | | |
| | 개관 3. 신용평가 절차 | | 개정 | | | 개정 | | | |
| | 기초 1. 신용등급 결정 | | 개정 | | | | | | |
| | 기초 2. 사업위험 평가 | | 개정 | | | | | | |
| | 기초 3. 산업위험 평가 | | 제정 | | | | | | |
| | 기초 4. 재무위험 평가 | | 개정 | | | | 개정 | | |
| | 기초 5. 계열관계 반영 | 개정 | | | | | | | |
| | 기초 6. 채무특성 반영 | 개정 | | | 개정 | | | | |
| | 기초 7. 단기등급 평가 | 개정 | 개정 | | 개정 | | | | |
| | 제 3 자 요청 평가 | | | | | 제정 | | | |
| | 기업집단내 소속기업에 대한 지원 중단사례가 발생시 신용평가 | | | | 제정 | | | | |
| | 신종자본증권 평가방법론 | | 개정 | 개정 | | 개정 | | | |
| | 지주회사 신용평가 | | | 개정 | | | | | |
| | 경기순환과 신용등급 | | | 개정 | | | | | |
| | 기업규모와 신용평가 | | | 개정 | | | | | |
| | M&A 와 신용평가 | | | 개정 | | | | | |
| | 자산유동화가 신용도에 미치는 영향 | | | 개정 | | | | | |
| | Bank Loan 신용평가 | | | 개정 | | 개정 | | | |
| | 벤처기업 신용평가 | | | | | | | | |
| 산업별 평가방법론 (비금융) | 산업별 평가방법론-총론 1 | 개정 | 제정 | 개정 | | | | | |
| | 산업별 평가방법론-총론 2 | | 제정 | | | | | | |
| | 자동차 | | 개정 | | | | 개정 | | |
| | 자동차부품 | | 개정 | | | | | | |
| | 조선 | | 개정 | | | | | | |
| | 철강 | | 개정 | | | | | 개정 | |
| | 비철금속 | | 개정 | | | | | | |
| | 정유 | | 개정 | | | | | | |
| | 석유화학 | | 개정 | | | | | | |
| | 제지 | | 개정 | | | | | | |
| | 화학섬유 | | 개정 | | | | | | |
| | 제약 | | 개정 | | | | | | 개정 |
| | 통신서비스 | | 개정 | | | | | | |
| | 디스플레이패널 | | 개정 | | | | | | 개정 |

| 구분 | 유효 기준 방법론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
| 산업별 평가방법론 (비금융) | 메모리반도체 | | 개정 | | | |
| | 전선 | | 개정 | | | |
| | SI | | 개정 | | | 개정 |
| | 곡물가공 | | 개정 | | | |
| | 식품가공 | | 개정 | | | |
| | 외식 | | 제정 | 개정 | | |
| | 주류 | | 개정 | | | |
| | 의류 | | 개정 | | | |
| | 건설 | 개정 | 개정 | | | 개정 |
| | 시멘트 | | 개정 | | | |
| | 해상운송 | 개정 | 개정 | | | |
| | 항공운송 | | 개정 | | | 개정 |
| | 소매유통 | | 개정 | | | |
| | 발전 | 개정 | 개정 | | | 개정 |
| | 도시가스 | | 개정 | | | |
| 방송서비스 | | 개정 | | | | |
| 호텔 | | 개정 | | | 개정 | |
| 기타 서비스업 | | | | 제정 | | |
| 비금융일반기업 | 제정 | 개정 | | | | |
| 산업별 평가방법론 (금융) | 은행 | | 개정 | | 개정 | |
| | 증권 | 개정 | 개정 | 개정 | | |
| | 생명보험 | | 개정 | | | 개정 |
| | 손해보험 | | 개정 | | | 개정 |
| | 신용카드 | | 개정 | | | |
| | 할부리스업 | | 개정 | | | 개정 |
| | 저축은행 | | 개정 | | | |
| | 부동산신탁업 | | 제정 | | | |
| | 대부업 | | | | 제정 | |
| | 기타금융업 | | 제정 | | | |
| 구조화금융 평가방법론 | SF 신용평가 일반론 | | 개정 | | | |
| | CDO(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 | | 개정 | | 개정 | |
| | Synthetic CDO | | 개정 | | 개정 | |
| | 부동산 PF 유동화 | | 개정 | | | |
| | ABCP | | 개정 | | | |
| | 소비자금융채권 | | 개정 | | | 개정 |
| | MBS | | 개정 | | | |

| 구분 | 유효 기준 방법론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
|------------------------|---------------------------------------|------|----------------------|------|------|----------|----------------------------|
| 구조화금융 평가방법론 | CMBS | | 개정 | | | 개정 제정 | |
| | 신용카드 매출채권 | | 개정 | | | | |
| | 자산유동화에 있어 Master Trust 방식의 이해 | | 개정 | | | | |
| | 기업 매출채권 | | 개정 | | | | |
| | 항공기금융채권 | | | | | | |
| | 일반 담보부채권 | | 개정 | | | | |
| | 리스채권 | | 개정 | | | | |
| | SLBS | | 개정 | | | | |
| 프로젝트금융 평가방법론 | 유동화 익스포져 | | 개정 | | | 개정 | |
| | 커버드본드(Covered bond) | | 개정 | | | | |
| | Project Finance | | | | | | 제정 제정 제정 제정 제정 |
| | 부동산 PF 평가방법론 | | | | | | |
| | 유료도로 | 제정 | | | | | |
| | 회원제골프장 | 제정 | | | | | |
| | 산업단지 | 제정 | | | | | |
| | 발전소 | 제정 | | | | | |
| 오브젝트금융(Object Finance) | 제정 | | | | | | |
| 공공부문 평가방법론 | 정부신용평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총론 비금융 공기업 | | 제정 제정 제정 제정 | | | | |
| 펀드 신용평가 | 단기금융/채권형 집합투자기구 평가방법론 | | 개정 | | | | |
| | 펀드신용평가 일반론 | | 제정 | | | | |